



2017년도 기준

# 뇌혈관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 뇌혈관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 Table of contents

<b>01</b> 한눈에 알아보는 복지혜택 .....	05
<b>02</b>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	06
<b>03</b>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	07~08
<b>04</b>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	09~10
<b>05</b>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스누비안나눔회 후원사업 ....	11
<b>06</b> 장애등록 .....	12~17
<b>07</b> 보장구 지원 .....	18~21
<b>08</b> 저소득층 지원제도 .....	22~24
<b>09</b>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	25~28
<b>10</b>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	29~30
교통약자 이용지원센터 .....	31



# 01 한눈에 알아보는 복지혜택



## 뇌혈관질환을 진단 받으셨나요?

“치료비가 걱정돼요!”



- ②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 ③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 ④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 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스누비안 나눔회 후원사업

“간병과 치료로 인해 힘들어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 관련제도
  - ⑥ 장애등록
  - ⑦ 보장구 지원사업
- 저소득층 생활지원제도
  - ⑧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⑧ 차상위계층 보호제도
  - ⑧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 기타 복지 서비스
  - 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02 증증질환 산정특례제도



### 어떤 제도인가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등 증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여 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상병명과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았을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뇌혈관질환의 경우, 다른 등록절차 없이 요양기관(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최대 30일간, 5%**로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100% 본인부담입니다.



[www.mohw.go.kr](http://www.mohw.go.kr)

# 03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 어떤 제도인가요?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4년부터 하고 있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신청 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17년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구분	신청기준	소득기준 - 건강보험 납입료(단위 : 원/월)						재산기준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본인 부담금 100만원 이상 발생시	의료급여 및 차상위 자격 외 별도 기준 없음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본인 부담금 200만원 이상 발생시	직장 가입자	40,570	69,120	89,580	110,180	131,270	151,540	<b>재산과표기준 (주택, 건물, 토지 등) : 2억7천만원 이하</b> - 5년미만 - 3000cc 자동차 지원제외 (단, 생업용, 장애인 차량, 3000cc 지원가능)
		지역 가입자	16,160	59,940	92,050	122,700	149,090	170,490	
의료비 과부담 가구 기준 중위 소득 (80~120%)	본인 부담금이 연소득 대비 30% 이상 발생시 (추가 심의 필요)	직장 가입자	50,840	86,850	111,560	137,080	163,090	189,880	
		지역 가입자	28,480	89,150	124,570	155,190	182,810	210,390	

\* 요양병원 입원치료비는 지원 불가함.

 [www.nhis.or.kr](http://www.nhis.or.kr)



## 03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180일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단, 법정본인부담금 지원상한에 따라 최종지원금이 달라짐)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지원  
(단, 특실, 다빈치로봇수술, 일부고가 약제, 신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제외)

확정본인 부담액	1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지원 비율	50%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50%	60%	70%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고객센터 : 1577-1000) 방문신청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의료급여, 차상위층 제외), 환자 통장 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04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 어떤 제도인가요?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포함)
  -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239,698	2,110,837	2,730,686	3,350,535	3,970,384	4,590,233	5,210,082

#### ②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③ **금융재산** : 가구 구성원의 금융재산이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500만원 이하(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이 해당)



www.mohw.go.kr



## 04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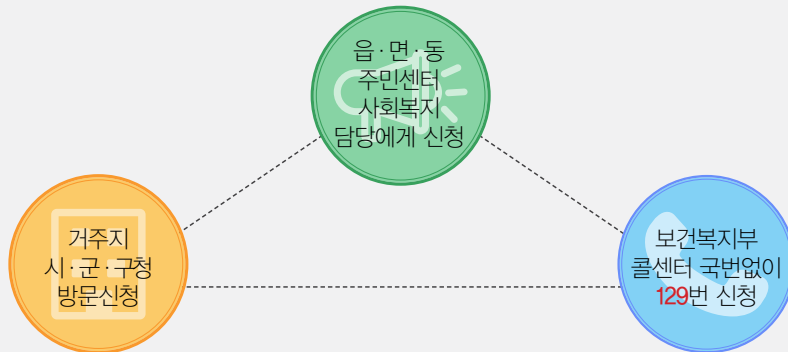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된 진료과에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 진료가 종료됨.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신청 가능)
- **지원제외 항목** :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료, 의료기구 구입비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병원발급** : 입원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재원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 **개별준비** : 재산관련 서류(통장사본, 전월세 임대계약서)
- **해당자에 한해** : 부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0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스누비안 나눔회 후원사업



### 어떤 제도 인가요?

- 스누비안 나눔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교직원 및 외부 후원자 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무의탁 환자 간병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그 대상이 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과 평가 후** 후원이 이루어집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병원치료비 후원      ● 무의탁 환자 간병비 후원



### 진료비 후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06 장애등록



### 어떤 제도인가요?

-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의 후유 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판정 시기에 맞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장애범주	후유장애	판정시기
신체적 장애	신체 외부 장애	뇌병변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원인 질환 또는 외상 후 <b>6개월 이상</b>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지체절단 / 척추고정술 / 안구적출 / 청력기관결손 / 후두전적출술 등은 바로 가능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치료 후
		지체 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 내부 장애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최초 진단 후 1년 지속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최초 진단 후 1년 경과, 최근 2개월 이상 치료 후 호전 없을 경우, 심장 / 폐 / 간 이식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투석치료가 3개월을 경과한 후 신장 이식수술 직후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복원수술 불가능 시 수술 직후 복원수술 가능 시 수술 1년 후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최초 진단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 70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선천성 지적장애 등은 바로 가능
		자폐성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정신 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1년 이상 치료 후 호전이 없을 경우



www.mohw.go.kr

## 06 장애등록



###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장애등록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  
등록신청

01

#### 진단의뢰 및 장애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장애진단서  
및 관련 구비서류 발급

02

#### 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심사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  
제출,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4~8주 소요)

03

#### 장애인등록

복지카드 수령,  
장애등록 서비스 이용

04



## 06 장애등록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표시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주요내용	지원가능등급						문의 및 신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등) 구입비 지원 (뇌병변, 지체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에 한함)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아동 전문 교육기관 이용	○	○	○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및 고용 지원	○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	○	○	○	○	○	한국정보화진흥원
무로법률구조제도 실시	○	○	○	○	○	○	대한법률구조공단
특허출원료/ 기술평가청구료 등 감면	○	○	○	○	○	○	특허청
상속세 인적공제	○	○	○	○	○	○	관할 세무서
증여세 면제	○	○	○	○	○	○	관할 세무서
소득공제 추가(인적/ 의료비/특수교육비/ 보험료) 공제	○	○	○	○	○	○	연말정산 시 공제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	○	○	○	차량등록기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	○	○	○	○	차량등록기관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	○	○	○	○	교통안전공단

## 06 장애등록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표시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주요내용	지원가능등급						문의 및 신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	○	○	○	복지카드 제시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또는 방송수신기 보급	○	○	○	○	○	○	KBS/한국전파진흥원
통신비(인터넷, 이동통신, 전화) 할인	○	○	○	○	○	○	해당 통신회사
교통비 (철도, 항공, 여객선, 도시철도, 고속도로 할인)	○	○	○				복지카드제시
입장료(국공립 문화시설) 할인	○	○	○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	○				차량등록기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				
전기요금 할인	○	○	○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 할인	○	○	○				관할 도시가스 지점
장애인 콜택시	○	○	○				관할 교통약자지원 센터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	○	○	○				읍·면·동 주민센터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	○	○	○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	○	○	○	○	○	



## 06 장애등록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표시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주요내용	지원 가능 등급						문의 및 신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	○	○	○	17쪽 참고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	○	○				읍·면·동 주민센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	○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	○	○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	○	○	○	○	
장애인 연금(중증)	○	○	△				
장애수당 지급(경증)			○	○	○	○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	○	○	○	○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	○	○	○	○	
문화바우처 지원	○	○	○	○	○	○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	○	○	○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	○				
가사간병방문 관리사 지원	○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	○	○	○	



## 06 장애등록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이 인정됨.**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해당표시가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 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 장애	○	○	○	○		
	시각 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				
	정신 장애	○					

※ 는 중복장애의 경우



## 07 보장구 지원

### 1. 장애인 보장구 지원제도



#### 어떤 제도인가요?

-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보장구 적용이 필요해진 경우, 보장구 대여사업 또는 보장구 구입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의사로부터 본인의 장애에 필요한 보장구를 처방 받은 경우
- 장애인 등록 전이라도 의사에 의해 필요 보장구를 처방받아 구입하였고, 6개월 이내에 장애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급여 대상 보장구 품목  
(다리플라스틱 보조기, 수동 휠체어, 전동보장구, 욕창 매트리스 등)

건강보험	-	상한액 범위 내에서 90% 지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 지원
의료급여	-	



www.nhis.or.kr

## 07 보장구 지원



###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대상자는 **주민등록 관할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전동보장구, 자세보조기 구는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승인 얻어야 지원 가능

####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수급자)



 [www.nhis.or.kr](http://www.nhis.or.kr)



## 07 보장구 지원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



#### 무엇을,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방식	물 품	지원한도
대여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수동휠체어	1년 간 최대 160만원 지원 건강보험 : 15% 자부담 차상위 : 7.5% 자부담 의료급여 : 자부담 없음
구입	이동변기, 자세변환 용구,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욕창 예방방석, 간이변기, 미끄럼 방지용품	

- ❖ 타법령(장애인 보장구 등)에 의해 지원받은 동일품목의 보장구는 지원불가
- ❖ 의료기간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상담 및 급여가능여부 조회(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영구구입 또는 대여 진행
- 복지용구사업소의 복지용구 급여 청구 및 지급



www.longtermcare.or.kr

## 07 보장구 지원

###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무료대여 사업



#### 무엇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일시적 장애로 잠시 동안 필요한 보장구에 대해 무료 대여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예약신청

구분	종류	기본 대여기간	연장	최대 대여기간
휠체어	기본형, 이동용, 기능형	2개월	1개월 단위 연장 2회	4개월 사용
보행기	바퀴	2개월	1개월 단위 연장 3회	5개월 사용
	지그재그, 해미	3개월		6개월 사용
지팡이	4발, 외발	3개월		
목발	나무, 알루미늄	3개월		
목욕기구	목욕의자	3개월		

❖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제외되며, 무료대여 품목은 지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 08 저소득층 지원제도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어떤 제도인가요?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혜택**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 맞춤형 급여 지원
- **대상** : 부양의무자를 통한 부양이 불가하고, 소득인정액이 제공 급여 별로 아래의 기준 이하인 가구

맞춤급여	기준중위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의료급여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448,124
주거급여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631,733
교육급여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정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www.mohw.go.kr

# 08 저소득층 지원제도



## 2. 차상위계층 보호제도

- **혜택** : 공과금(전기세,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등) 할인, 주택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우선권 부여, 양곡 할인 지원, 문화공연 할인 등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취약한 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종류	기준	추가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으로 투병중인 자	의료비 경감
차상위 자활 근로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	일자리 지원
차상위 장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1~6급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교육비 지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의 50%(원/월)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기준중위소득의 52%(원/월)	859,524	1,463,513	2,323,033	2,752,799	3,182,562
기준중위소득의 60%(원/월)	991,758	1,684,549	2,184,549	2,680,428	3,176,307



## 08 저소득층 지원제도

### 3.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혜택** : 생계비, 의료비(간병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사례관리 등 지원
- **대상** : 경기도 거주자로 위기상황(소득자의 사망/가출/군입대, 중한질병 또는 부상, 학대, 유기, 폭력피해, 이혼, 실직, 사업실패, 화재, 자연재해 등)에 처해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구
- **기준** : ① **소득**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② **재산 (시가표준액 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b>대도시</b>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오산, 구리, 의왕, 하남, 과천
<b>중소도시</b>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③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www.gg.go.kr



## 09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 어떤 제도인가요?

-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뇌혈관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혼자서 세수, 목욕, 식사, 세탁, 배변처리, 간호처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인지, 가사활동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뇌혈관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을 가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노인성질환의 급성기 환자들은 발병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등급	판정기준
1등급	<b>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b> (100점 중 중 95점 이상)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	<b>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b> (75점 이상 ~ 95점 미만) • 휠체어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 유지 못함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3등급	<b>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b>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식사, 배설, 옷 입고 벗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4등급	<b>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b>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	<b>치매환자로서</b>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www.longtermcare.or.kr](http://www.longtermcare.or.kr)



## 09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 인터넷, 유선, 방문, 우편, 팩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01 신청 (유선,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 02 국민건강 보험공단  
직원 방문심사
- 03 등급판정
- 04 결과통지 (1개월 소요)
- 05 급여제공



[www.longtermcare.or.kr](http://www.longtermcare.or.kr)

## 09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
-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시설 및 재가 장기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급여내용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관 가정 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 20% 자부담</li> <li>● 차상위 : 10% 자부담</li> <li>● 의료급여 : 자부담 없음</li> </ul>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 15% 자부담</li> <li>● 차상위 : 7.5% 자부담</li> <li>● 의료급여 : 자부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별 월 한도액</li> <li>- 1등급 : 1,252,000원</li> <li>- 2등급 : 1,103,400원</li> <li>- 3등급 : 1,043,700원</li> <li>- 4등급 : 985,200원</li> <li>- 5등급 : 843,200원</li> </ul>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6~12시간)을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일정기간(15일 이내)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필요한 복지용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이동변기 등)를 대여하거나 제공(15% 자부담, 연 160만원 한도)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월 15만원)	



www.longtermcare.or.kr



## 09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유효기간(1~2년)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장기요양 인정자의 심신상태에 변화가 있어 현재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등급 갱신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받는 경우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급성기 질환자에 해당하므로 퇴원 후 신청 가능합니다.
- ❖ 장기요양 등급 내 진입을 하지 못한 등급 외 A, B, C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 병방문서비스 신청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longtermcare.or.kr](http://www.longtermcare.or.kr)



## 어떤 제도인가요?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중위 소득의 160%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1인	2,645천원	81,698	81,836	82,550
2인	4,503천원	138,870	157,172	140,943
3인	5,825천원	180,122	200,115	183,218
4인	7,148천원	219,758	242,063	226,065
5인	8,470천원	269,208	288,090	281,298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변활동지원** : 식사, 세면, 옷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 화장실 이용,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장보기, 청소, 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www.mohw.go.kr](http://www.mohw.go.kr)



## 1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 어떤 제도인가요?

-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 가사 지원서비스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 이동 도움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동행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영양상담, 구강위생 등
- ❖ 서비스 대상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 차등 지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역	전화번호
성남	1577 - 1158
수원한아름 콜택시	031 - 253 - 5525
용인	1588 - 6585
화성	1588 - 0677
이천	1899 - 0017
광주(경기)	1666 - 6636





[136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진료예약 1583-3369 <http://ggccvc.snubh.org>

❖ 본 책에 수록된 정보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